



# 2019년 한-베트남 반부패 MOU 이행 협력회의 출장 결과

2020. 1.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 목 차

I. 출장개요 .....	1
---------------	---

## II. 주요 활동결과

①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	2
----------------------------	---

② 한-베트남 반부패 MOU 이행사항 논의 .....	6
-------------------------------	---

③ 한-베트남 반부패 세미나 .....	7
-----------------------	---

④ 지방내무위원회(꽝닌성) 대상 반부패 자문 .....	26
--------------------------------	----

III. 평가 및 향후계획 .....	35
----------------------	----

# I 출장 개요

## □ 개 요

- 기간·장소 : '19. 12. 16(월)~19(목) 3박 4일/베트남 하노이, 꽝닌성
- 방문기관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The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
- 출장단 :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최현민 민간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변규태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 □ 주요 활동

- [12.16~17] 한-베트남 반부패 MOU 이행사항 논의 및 세미나
  - (이행사항 논의) 양 기관 간 MOU 이행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세미나) 2019년 베트남 반부패 활동,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방향 및 성과, 공공재정환수법, 한국의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소개
- [12.18] 베트남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대상 반부패 자문
  -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반부패 자문, 위원회 주요 반부패 정책 소개

## □ 출장 일정

일 자	시간	업무수행 내용
12.16(월)	10:05	○ 인천(10:05) → 하노이(13:10)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12.17(화)	09:00~09:30	○ 한-베트남 반부패 MOU 이행사항 논의 - MOU 이행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계획 논의
	09:30~12:00	○ 한-베트남 반부패 세미나 - 2019년 베트남 주요 반부패 활동 및 정책 소개 - 한국의 반부패정책 방향 및 성과
	14:00~17:00	- 공공재정환수법 - 한국의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12.18(수)	07:00~18:00	○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대상 반부패 자문 -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반부패 자문, 위원회 주요 반부패 정책 소개
12.19(목)	12:20	○ 하노이(12:20) → 인천(18:25)

## II 주요 활동결과

### 1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일 시 : '19. 12. 16.(월) 15:00~16:00
- 장 소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청사
- 참석자
  - (우리측) 청렴총괄과장, 최현민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 (베트남측)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국제업무국장 등 5명
- 위원회 대표단 주요말씀 (청렴총괄과장)
  -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 번 협력회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최근에 동남아시아게임 축구에서 베트남의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역사적으로 유사하며, 양국 모두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잘 간직해 오고 있음
    - 양 기관의 공통 관심사인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여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2014년 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 2019년 베트남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음
    - 이러한 베트남 사회의 발전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을 2018년 보다

무려 10단계나 높게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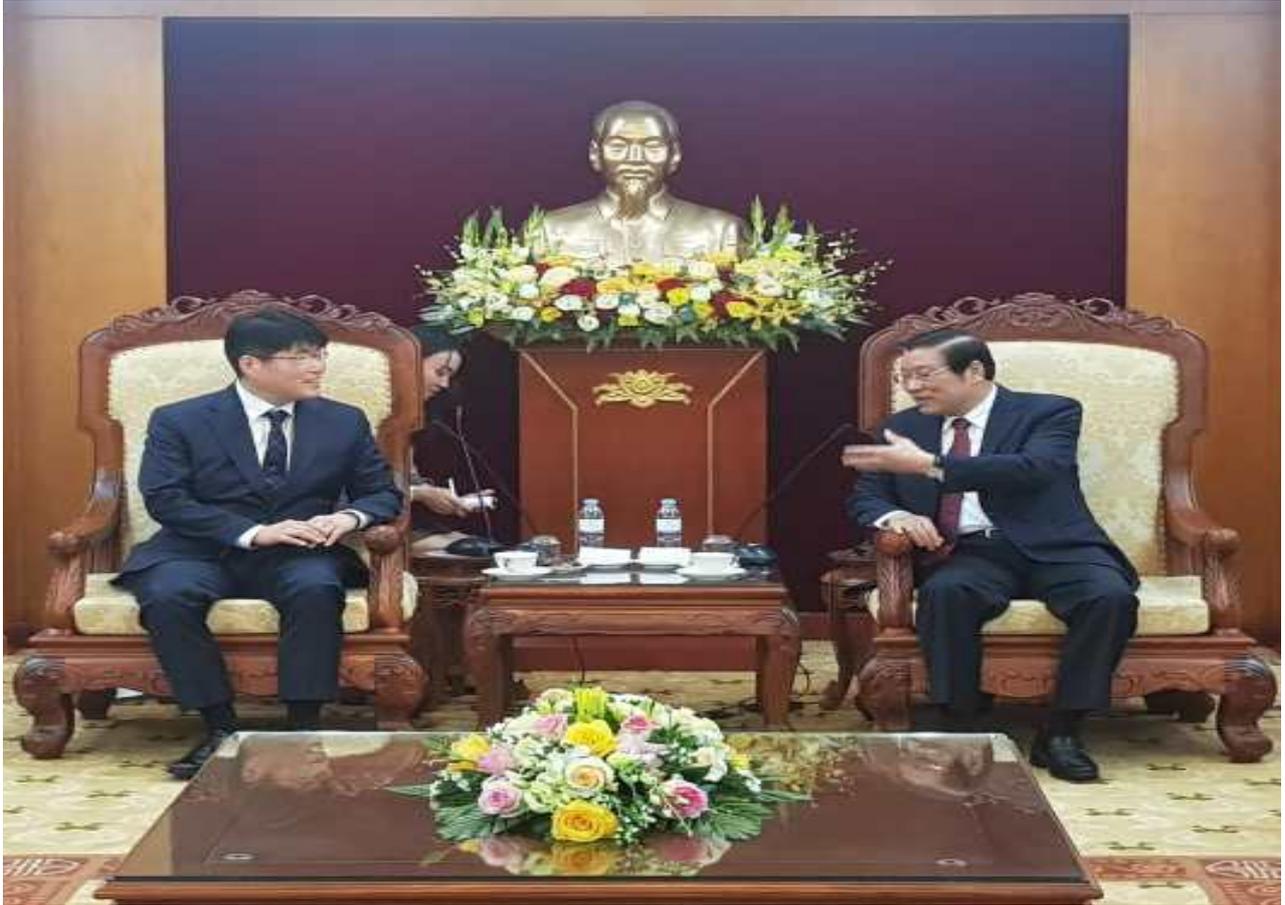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정부와 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함
- 저는 베트남 지압 장군의 적이 원하지 않은 장소, 시간, 방법으로 싸우는 3불 전략이 반부패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양국의 우수한 정책 뿐 아니라 이러한 역사·문화 등도 서로 공유한다면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함
- 위원회는 내년 6월 서울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개최할 예정임. 내무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음
-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주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내무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주요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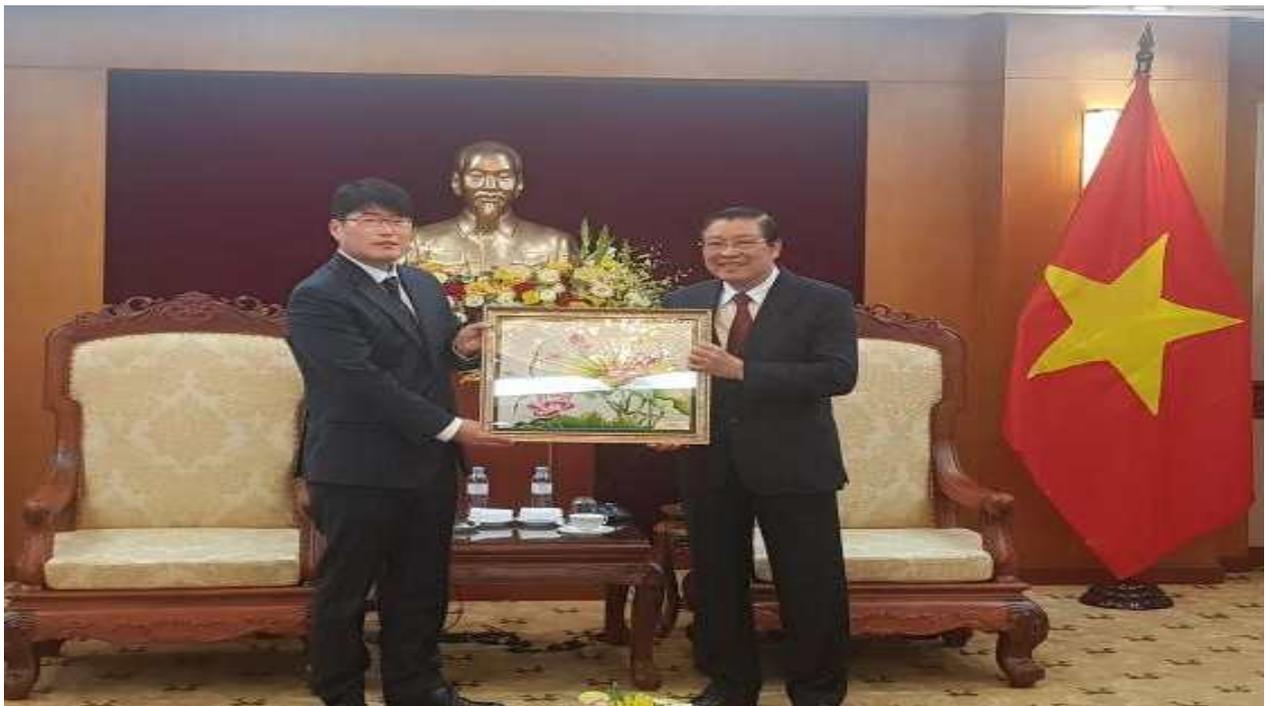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저희와 공유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해 주신 국민권익위 대표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아시다시피 한-베트남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격상되었으며 양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이 이러한 양국 관계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함
- 한-베트남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사점이 많음. 900년전 베트남 왕자 리퐁편은 한국으로 가 화산이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알고 있음
- 경제적으로는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며, 최대 투자국임.

또한, 베트남에 한국 기업 8천 여개가 활동 중이며, 한국은 ODA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액 천억 달러를 목표로도 하고 있음

- 양국 간 인적교류도 활발함. 한국에 베트남 교민들이 18만 명, 베트남에 한국인이 16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저희는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현재 경제, 무역, 투자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베트남은 2019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
- 첫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의 청렴 인식을 높일 것임. 둘째, 부패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셋째 처벌을 통해 부패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임. 넷째 부패 없이도 국민과 공직자가 잘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 중앙내무위원회는 한국의 국민권익위와 반부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왔으며 한국의 반부패 활동을 매우 높이 평가함.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음
- 베트남은 국민권익위와 협력한 내용을 반부패 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부패 체계를 개선하고 있음. 특히 부패 재산을 환수하는 부분을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많은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함
  -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 대표단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기념사진 촬영>

□ 일 시 : '19. 12. 17.(화) 09:00~09:30

□ 장 소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청사

□ 참석자

- (우리측) 청렴총괄과장, 최현민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 (베트남측) 중앙내무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업무국장 등 11명

□ MOU 이행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의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반부패 정책·경험 공유 및 직원 연수 실시,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양 기관 협력 활동성과 홍보
-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는 MOU를 체결한 이후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계획대로 지속적인 직원 교류를 실시하여 양국의 반부패 정보를 공유하였음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 공유는 베트남의 반부패 법령과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였으며,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베트남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양 기관 간 향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반부패 협력 MOU 만료에 따른 연장 검토
    - \* 2020년 베트남 측에서 한국 방문 예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MOU 연장 가능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시 베트남 측 전문가 초청 및 참석
  - 베트남 측의 2020년 한국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 반부패 활동 공유
    -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부패재산 환수 등

## 1. 2019년 베트남 반부패 성과 소개 (중앙내무위원회)

- 2019년에는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유관기관, 정치-사회단체,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반부패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음

### (1) 반부패 체계 구축 및 개선

- 2019년에는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국가감사법, 공직자법, 공공투자법 등 많은 규정이 제정·발행되었음. 정부는 시행령 122건, 결의서 118건, 규정 42건을 발행하였음.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4,820 건의 문서를 발행했으며, 361 건의 문서를 개정하고 보완하여 국가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부패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 허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
- 정부는 2018년 반부패법 이행 조치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시행령을 발표함.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 관련 규정들을 완성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정부는 유관기관들에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강화하여 개인과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사업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하였음

### (2) 반부패 교육 및 국제협력

-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반부패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135,601차례 3,241,642명의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반부패법 교육을 실시함

- 또한, 2,419,518 건의 반부패법에 관련된 책자 및 서류를 발행하였음
- 교육을 통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패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 기소,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반부패 활동에 관한 정보에 포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반부패 활동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었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반부패에 대한 국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베트남은 유엔 반부패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APEC, ASEAN, WTO, CPTPP 등 투명성과 반부패를 위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특히 부패 재산 환수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의 유관기관들 및 단체들은 많은 포럼에 참여하고 많은 국제 기구 및 기관들과 협력하며 반부패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를 통해 국제 전문가들에게 반부패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었음

### (3) 반부패 정책 시행 결과

#### <행정개혁 및 투명성 제고>

- 정부는 국가 행정의 효율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 개혁 강화, 사업 조건 간소화, 전자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기관들은 29건의 법적 규정을 발행하여 6,191건의 사업 조건 규정 중에 3,425건의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590만 일의 근무일을 단축시키고 1년에 8,939억 동의 예산을 절약하였음. 전문적 관리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출입 품목 목록 또한 2015년에 82,700 개의 품목에서 70,087 품목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반부패법의 신규 규정 및 정보접근법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유관기관들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과 기업, 사회단체들이 정부기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언론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기관 활동 현황 및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야 함. 반부패와 관련된 검사, 감사, 민원처리, 신고처리의 결과는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함

### <재산 및 소득 공개>

- 각급 기관 및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산 신고 및 공개와 관련된 반부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음. 재산·소득 신고 대상자의 99.9%가 신고를 하였고, 공개된 신고서가 99.4%에 도달했으며 46 명의 재산, 소득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음

### <행동 요령 매뉴얼 및 직업 윤리 규칙 이행>

- 국무총리의 2019년 4월과 6월 자 공공서비스 분야 반부패와 관련된 지시문은 공직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700 개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행동요령 지침 이행사항을 조사했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처분하고 있음
- 선물에 대한 규정 이행은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선물 주고받기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의 효율을 높이며 전통 풍습을 남용한 뇌물,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행태로든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발행하였음.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선물

관리 및 처리를 해야 함

- 선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공무원 및 공직자 징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받으며, 국가 재산 관리 및 사용 위반에 관해서도 처벌을 받을 것임. 보고 기간 동안 6명의 개인이 총 1억 820천만 동 상당한 선물을 반납했으며 부정적으로 선물 수락한 3건의 사례가 적발되어 처벌하였음

#### <기관장의 감독 책임>

- 2019년에는 부패 행위 발생 책임에 대한 30명의 기관장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3명이 형사처벌을 받음

#### <결제 방식 전환>

-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에게 비현금 결제 방식을 촉진하고 경제 범죄와 돈세탁 방지 조치 강화하고 있음. 비현금 결제 방식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음. 전국에서 18,500 개가 넘는 ATM 기계와 24.3만개의 카드 결제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 교육, 전기·수도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장하고 있음

#### (4) 부패 적발 및 처리 결과

- 2019년에는 7,500 건 이상의 행정 검사와 약 252,500 건의 전문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81.8 조동과 800ha 이상의 토지를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계 조치를 하고 있음. 검사를 통해서 69건에서 45명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국가감찰원은 122조동 이상의 재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범죄 행위가 있는 7건의 사건을 경찰에 이첩함

- 인민 경찰청은 423건의 사건의 1,073 명의 부패 범죄자를 수사함. 225 사건에 대해 685명의 피고인을 기소를 했으며 현재 174 건의 사건과 347 명의 피고인을 수사하고 있음. 수리된 사건에서 환수된 자산은 9.4조동이며 환수된 토지는 11.867m<sup>2</sup>임

#### (5) 중앙내무위원회 활동

- 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 따라 부패 및 경제와 관련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재산 환수 계획을 완료했으며 검사를 통해서 재산 환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의 지도 능력 입증, 부패 행위 신고 처리와 관련된 절차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음. 아울러, 41개의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의 반부패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 특히, 다음과 같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심각하고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리하였음
- (1) 비나신의 "재산 점유를 위한 직위 남용" 사건 (2) VN Pharma 주식회사의 "가짜 의약품 거래" 사건 (3)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의 "심각한 결과초래를 한 국가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 사건 (4) 다낭 및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업무 직위 남용" 사건 (5) 동아 주식무역회사에서 발생한 "재산 점유를 위한 권한 남용" 사건

## 2.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방향 및 성과 (국민권익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세계 반부패 지도를 보면 북유럽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부패는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음
- 국제사회는 지난 20여년 간 OECD 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은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등 국제사회의 반부패 공조 움직임과 함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민단체와 학계 중심의 움직임이 생겨남
- 그 결과, 2001년 ‘부패방지법’ 이 제정되고 반부패전담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어 법령 제도개선, 청렴도 측정, 청렴 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등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정책과 부패사건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정책이 마련되었음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부패방지 기능, 국민고충 처리,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반부패 활동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반부패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청탁금지법’, 오늘 설명드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의 제도 발전도 계속되어 왔음
- 현 정부는 반부패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고 있음
  -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 또한, 경제계·직능계·시민사회·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반부패 의제를 발굴하고 반부패 정책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을 수립·확정한 바 있음
- 이 계획은 국가재정누수 방지, 토착비리 근절,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각 부처와 소관기관의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 시행에 따라 국민과 공직자 모두 그릇된 관행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사회 전반의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음

○ 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내부 고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공익신고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정의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알리고 있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부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어 신고자 보호수준을 한층 더 탄탄히 했음
- 특히 지난 연말 OECD 뇌물방지 협약 실사 점검에서는 한국의 신고자보호시스템이 우수사례로 평가된 바 있음

### 3.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

- 매년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관 행정청이 이러한 부정청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어려웠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강화 뿐 아니라, 부정청구에 의한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제정의의가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발생시,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임
  -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이 법에 의해 신고자 보호는 물론 보상 및 포상도 받게 됨
- 먼저,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의 정의, 두 번째 부정청구, 환수, 제재부가금과 명단공표, 마지막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법에서 공공재정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의미함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청년수당, 유아학비, 출산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정청구 유형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뉨. 허위청구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다청구는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외사용이란 법령, 자치법규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오지급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임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됨
- 행정청은 부정수익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부정이익을 환수하여야함
  -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여야 하고, 특히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표하여야 함
  - 이러한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과,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필요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를 한 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때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찰 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해당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신고자는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질의응답>**

- **(중앙내무위) 한국은 연간 보조금이 얼마 정도인지?**
- (권익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포함하여 2017년 812억 달러, 2018년 904억 달러, 2019년 1,067억 달러로 연도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중앙내무위) 베트남도 재산 환수 등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하게 된 이유는?**
- (권익위)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 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이 필요했고, 부정청구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한국 정부는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여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시행하였음
- **(중앙내무위) 오지급에 대한 경우도 이자를 포함해서 환수하는지?**
- (권익위) 오지급도 부정이익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환수 시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해야함
- **(중앙내무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지?**
- (권익위)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재부가금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에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함
- **(중앙내무위) 부과처분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 (권익위)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내무위) 보상금 지급 절차는?**

○ (권익위) 보상금은 신고인이 직접 국민권익위에 신청하고,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

○ **(중앙내무위) 명단 공표는 어떻게 하는지?**

○ (권익위) 각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계속 공개함

○ **(중앙내무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만 해야하는지?**

○ (권익위)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음. 공직자는 부정청구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고해야 함.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하며,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함

○ **(중앙내무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시 처벌은?**

○ (권익위)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4.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국민권익위)

-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2018년 1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을 통해 3월에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출범하였음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의 추진전략은 먼저,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정책 수립·시행’ ② ‘청렴사회를 위한 각계의 동참’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세부과제로는 ① ‘국민참여를 통한 반부패정책 점검’ ②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 의제 논의기구 운영’ ③ ‘범사회적 청렴운동 전개’를 설정하였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공, 시민사회, 경제계, 직능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 30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부패정책을 논의하여 정부와 사회에 제안하고 기존 정책을 점검하며, 청렴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청렴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중앙 외에도 17개 광역 시·도별로 각각 구성되어 해당 지역의 부패문제 해소와 청렴실천운동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제안한 반부패 정책과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다시 논의하게 됨
-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함

- 이를 위해 오프라인(Off-line)에서는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을 선발하여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운영하고,
  - 온라인(On-line)에서는 국민참여포털 '국민생각함' 내에 '반부패·청렴 정책'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음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정부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함께 수립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50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 반칙과 부패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여 정책의 개선을 직접 제안하고 있음
- 두 번째,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 의제 논의기구로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정부가 마련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반부패 이슈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
  - 지역에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17개 광역 시·도별로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설치되어, 지역의 부패문제 해소를 위해 각계가 협력하고 있음
- 셋째, 범사회적 청렴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 각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각계가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실천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2018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시·도와 국방분야, 회계분야 등 5개 산업분야에서 '청렴사회협약'이 체결되었음
- 민간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 연간 최대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부패문제를 소재로 창작연극을 만들어 공연하는 사업에 지원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또한, 지역주민들이 '청렴'을 주제로 함께 즐기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청렴문화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들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개별 기업의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방문교육을 연간 20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 각 기업 내 '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이 돌아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윤리경영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하여 전국의 기업, 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음
- 먼저, 반부패정책의 추진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견을 수렴하여 시행했다면,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한 이후에는 반부패정책 마련 단계부터 사회각계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둘째,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및 교원대상 과정임
  -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상 청렴인형극, 초중고 학생대상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둘째,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제안한 정책과제가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의 제안 내용을, 정부가 즉각 반영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 특히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의 경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제안한 이후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토론하는 등 정책반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임
- 마지막으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은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개최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TI)와 IACC측은 한국이 “민관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라고 선정이유를 밝힌 바 있음
  - 또한,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국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부패예방 우수사례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가 소개되었음
  - 국내 시민단체들 역시 현 정부의 대표적 반부패 성과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와 ‘청렴사회협약’이라고 함

**<질의응답>**

- **(중앙내무위) 회의는 얼마나 자주하는지?**
- (권익위) 민관협회의의 정책논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와 6개의 전문분과 위원회(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를 구성하였으며, 정기회의 외에도 필요시 공동의장의 동의하에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2018년 민관협회의는 총 5회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4회 개최하였음
- **(중앙내무위) 민관협회의에 공공,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 30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지?**
- (권익위) 반부패정책 제언·점검·평가, 사회각계 및 국민의견 수렴, 청렴 사회협약 체결 및 범국민 청렴실천운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각 사회를 대표하는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장과 호선으로 선출된 민간의장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음

부문	참여 단체	부문	참여 단체
경제 (4명)	대한상공회의소	직능 (5명)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민 사회 (8명)	참여연대/ 공동대표	언론 · 학계 (7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방송협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신문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신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행정연구원
공공 (3명)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3명)	한국부패학회
	대한민국지도자협의회		한국윤리경영학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대화문화아카데미
			한국청렴운동본부

- (중앙내무위)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 (권익위)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제작해 온 윤리경영 정보지로, 국내외 윤리경영 최신 정보와 동향을 기업 관계자, 학계 등에 E-메일과 브로슈어를 통해 매월 제공해 왔으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게시하여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기업윤리 브리프스의 품질 향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선하고 있음



- (중앙내무위) 국민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 (권익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방향과 정책변화에 대한 효과성과 국민체감 등의 피드백을 얻고자 반부패·청렴에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50명의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구성·시범 운영함





<반부패 세미나>

## 4

###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대상 반부패 자문

- 일 시 : '19. 12. 18.(수) 10:00~15:00
- 장 소 :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청사
- 참석자
  - (우리측) 청렴총괄과장, 최현민 사무관, 변규태 주무관
  - (베트남측) 꽝닌성 지방내무위원회 위원장 등 10명
- 주요 활동결과

#### 1. 위원회 대표단 인사말씀 (청렴총괄과장)

- 바쁘신 가운데 저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꽝닌성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4년에도 이 곳 꽝닌성 내무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양국의 관계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
  -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 베트남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동 중이고,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에는 베트남 축구팀과 박항서 감독이 힘을 합쳐 60년 만에 동남아시아게임에서 우승도 하였음
- 국제무대에서도 베트남이 내년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자 아세안(ASEAN) 의장국이 된 만큼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양국 간 경제, 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베트남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2010년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2013년 베트남 검찰원과 MOU를 체결하여 반부패 분야에서 협력회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직원 연수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해 왔음
  - 2016년에는 UNDP, 베트남 검찰원과 협력하여 위원회의 주요 반부패 정책인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베트남과 공유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부패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임
- 베트남 쩡닌성 내무위원회에서도 양국의 반부패 협력과 상호우호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쩡닌성 내무위원장 인사말씀

- 저희 쩡닌성을 방문해주신 한국 대표단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부위원장 2명 등 여러 직원들이 참석하였음
- 한국은 베트남과 매우 가까운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베트남 사람들 중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임
-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베트남 가정에서는 한국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지난주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하여 동남아시아게임 축구에서

우승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박항서 감독 덕택이라고 생각함

- 한국은 고속도로 건설 이후 이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다고 알고 있음. 팡닌성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항,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베트남은 당 서기장의 지시 하에 중앙부터 지방까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전직 장관 두 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시행령, 지시서, 규정들도 많이 발행하고 있음
  - 팡닌성 내무위원회는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에는 백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한 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통해 반부패 추진실적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있음. 최근에는 팡닌성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을 부패혐의로 구속시키기도 하였음
-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음
-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권익위와 반부패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음

### 3. 팡닌성 지방내무위 대상 반부패 자문

- 최근에 건설된 팡닌성 공항과 고속도로는 팡닌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함

- 꺽닌성이 경제의 양적 성장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
- 부패 문제가 만연하면 경제발전에 투자된 예산들이 제대로 투자에 쓰이지 못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들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불안정해 짐
- 하지만 베트남은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부패 문제에 대한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생각함
- 부패는 처벌 못지않게 반부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부패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베트남에서 반부패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앙보다 지방내무위의 역할이 중요함
- 국민들이나 기업인은 주로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지방공직자의 행동과 인식이 변해야 베트남의 부패 수준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임
- 지방의 부패 문제는 국가 차원의 부패 문제에서 처음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접촉 시간이 많은 지방정부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부패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임
- 지방 차원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세 가지 정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 먼저 한국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 서비스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민원24를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 처리기일 등을 민원인이 시스템

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담당자 간 접촉이 줄어들어 급행료 등의 부패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이 되었음

- 두 번째로는 2003년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음. 공직자가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권익위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세 번째로 2002년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조달 분야임. 계약 절차에 과정에서 불필요한 만남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고 계약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함
  -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입찰정보가 파악되고 입찰 계약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조달정보가 실시간 공개 되고, 표준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조달 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경영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 대상으로 부패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지방정부에서의 부패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베트남 현지에 적합한 모형으로 현지화 해 나가길 바람

#### 4. 위원회 주요 기능 및 반부패 정책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했음
- 국민권익위의 위원은 위원장,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500명임
- 국민권익위는 부패 예방과 사후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의 예방조치에는 청렴교육, 청렴도측정, 공직자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등이 있으며, 사후 조치로는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있음
- 먼저, 권익위는 공직자의 반부패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연수원과 온라인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학생과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는 2002년에 청렴도 측정을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주 발표한 2019년 청렴도측정은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약 26만 명의 시민과 해당 기관의 공직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6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였음
- 청렴도 측정이 공공부문 내 부패 수준과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한해 동안 시행한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도 실시하고 있음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7년 UNDP와 공동 사업으로 베트남에 도입을 지원하여 실시되고 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가 수립한

반부패 정책을 개별 공공기관들이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하겠음

- 위원회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상에 내재한 부패위험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있음
  - 모든 공공기관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부패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현행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에 약 300여 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음
-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는 공직자의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03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는 부패신고와 함께,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부패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패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음
-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우선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하며, 해고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 아울러 신고 후 겪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손실을 회복한 경우 최대 30억 원(약 3백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응답>

○ **(광닌성 내무위) 청렴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 (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각 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함

○ **(광닌성 내무위) 청렴도측정은 기관 내·외부 어디에서 하는지?**

○ (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인식과 부패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으로, 청렴도 측정 모형과 측정대상 업무는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설문조사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 리서치 업체에서 실시함

○ **(광닌성 내무위) 청렴도 측정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 (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 **(광닌성 내무위) 한국에서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 (권익위) 부패 공무원 처벌은 사법부의 재판을 통한 처벌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음. 위원회는 부패사건을 조사해 징계가 필요함을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함. 소속기관에서는 법률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결과를 권익위에 알려야 함. 소속기관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징계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음

○ **(광닌성 내무위) 한국은 부패를 근절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 지는데 성공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 (권익위) 90년대 후반 검찰·경찰의 처벌 위주 부패방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예방위주의 정책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됨. 부패사건의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여,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공분야 내 부패 수준과 위험도를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를 진단해 부패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부패 방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 외에도 앞서 설명한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청렴 교육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광닌성 내무위)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 (권익위)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음.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있음.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경찰로 이첩하고, 행정벌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감사원이나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으로 이첩하고 있음.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단체사진 촬영>

### III 평가 및 향후계획

#### □ 한-베트남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패가 심화되지 않도록 베트남의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반부패 전담기구의 권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등 우리 반부패 정책 전수에 유리한 조건 보유
  - 2020년 베트남 대표단의 위원회 방문 시 베트남에서 관심을 보인 부패재산 환수, 공공재정환수법을 중심으로 연수 실시
    - ※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2020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
  - 기 전수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 중앙정부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문 등 컨설팅 지원
  - 베트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UNDP와 공동으로 워크숍 마련

#### □ 베트남 측 협조사항 후속조치 이행

- 베트남 중앙내무위에서 한국의 영문 법령집과 정책 매뉴얼 요청
  - 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위원회 법령 전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뉴얼, Q&A 등을 번역한 영문 정책자료 제공
- 2020년 베트남 측의 위원회 방문 시 부패재산 환수에 관한 기술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검찰청에 협조 요청

## 첨부 1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개황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개황

(CCIA, The Central Commission for Internal Affairs)

- 2013년 2월 효과적인 반부패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 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강화를 위해 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거 설립

※ 중앙내무위원회

- 설립근거 : 베트남 부패방지법('13.2월 개정)
- 구성 : 당소속 기관으로 위원장은 Phan Dinh Trac('16.2월~), 부위원장은 Pham Anh Tuan을 포함한 5명, 그 밖에 10명의 위원(총 16명)
- 권한 : 반부패법 이행 감독·촉구, 공공분야 중대·복잡한 부패사건의 기소·판결에 대한 조사·감사·감독, 중대 부패 사건 기소 및 판결 감사, 지위 공직자의 직위해제 등
- \* 공산당 소속으로 행정, 입법, 사법기능 보유

- 부패방지법상 부패전담기구로, 부패방지 법규 및 제재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반부패 관련 기구 및 법원, 민원신고 및 부패신고 처리 관련 기관의 활동 조사·감독·감사·조정, 총리 직속 기관 기관장 중 부패혐의 인물 처리 관련 자문 지원, 지방내무위원회 활동 감독·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권한

1. 관계기관에 대해 부패관련 정보 요구
2.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칭찬) 요구
3.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 시 관련 기관·기관의 관계자 소환

- 위원회의 구성 ※ 직원: 약 600명(위원회(80명)+ 지방 위원회(63개 지역 또는 도시, 각 10~15명))



## 첨부 2 한-베트남 반부패 MOU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려는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OSCAC) 측의 요청('08.9월)에 따라,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홍보, 외교적 기반확대,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등을 고려, MOU 체결('10.2.3., 하노이)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가 조직개편에 의해 중앙내무 위원회로 변경('13.2월)됨에 따라,
  - 기존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와의 협력 MOU를 승계하여 중앙내무 위원회와 MOU 연장 체결('13.5.9., 서면)
- 베트남 측 요청에 따라 권익위-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간 MOU 연장 체결('16.10.14., 서울)

※ 위원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팜 안 투안(Pham Anh Tuan) 부위원장 간 서명

####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간 양해각서 연장('16.10.14.)

- 체결기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
- 기간 : 2년(2016.10월 ~ 2018.10월)
- 목 적 :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역량 강화
- 주요 협력 활동
  - 양국 간 부패방지 정책·경험 공유 및 관련 단기연수 실시
  - 반부패 정책공유를 위한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및 참석
  -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협력 활동의 추진상황 및 성과 홍보

### □ 추진 현황

- 베트남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 1차('10.6.7~11, 서울)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공직자 재산신고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5명 참석

※ 이후 베트남은 내부비리고발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마련, 내부비리를 고발한 88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추진

- 2차('11.6.27~29, 서울) :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제도개선(건설·건축분야 사례 중심), 국가청렴도 향상방안, 토지분야 반부패정책(보상제도 중심), 한국의 UN반부패협약 이행 경험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5명 참석

- 3차('12.7.23~27, 서울) : 반부패법과 규제(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사건의 조사 및 처리, 조달분야 부패예방

※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직원 6명 참석

- 4차('13.9.9~11, 서울) : 부패영향평가, 청렴도측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3명 참석

- 5차('16.10.14, 서울)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3명 참석

- 6차('17.3.21, 3.28, 세종) :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등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 직원 19명 참석

## ○ 기타 협력활동

- 베트남 「부패평가기준 워크숍」 참석('10.6.23, 하노이)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주제 발표

- 베트남 공무원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0.5.10/10.25, 서울)

- 2010년 협력사업 이행 결과보고서 교환('11.3.3/4.7)

- 한-베트남 협력회의 및 청렴도평가 세미나('11.9.7~9, 하노이)

- 베트남 「신고자보호 워크숍」 참석('11.11.3, 하노이)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 성과와 도전' 주제 발표

- 2011년 협력사업 이행 결과보고서 교환('12.3.27/4.11)

- 베트남 공무원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12.7.23, 서울)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2.10.25, 하노이)
- 베트남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OSCAC)가 중앙내무위원회(CCIA)로 개편(‘13.2.1)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와 MOU 연장 합의(‘13.5.9)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4.11.13, 하노이)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6.10.14, 서울)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7.3.17, 하노이)
- 권익위-UNDP 공동 베트남 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17.10.24~26, 세종)
- ※ 베트남 검찰원 외 중앙내무위, 총리실 등 관계기관 8명 참석
- 한-베트남 협력회의(이행성과 평가, 협력방향 논의)(‘17.11.29, 하노이)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와 MOU 연장 합의(‘18.10.29)

##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 제1조: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 제2조: 협력활동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
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 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4조: 개정 및 보완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보완한다.
2.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 제5조: 실무적 사항

1.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 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2. 양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 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추진을 담당한다.
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인사과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 제6조: 발효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3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2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
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6년 10월 \_\_\_\_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서울 및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